

도서관 규정

1983. 3. 1 제정 1983. 7. 1 개정
 1985. 6. 1 개정 1987. 6. 1 개정
 1991. 1. 1 개정 1994. 8.22 개정
 1994. 9.16 개정 1995. 7.19 개정
 2005. 7.15 개정 2007.11. 2 개정
 2010. 6. 4 개정 2013. 3. 1 일부개정
 2015. 3. 30 일부개정 2016. 4.25 일부개정
 2019. 7.1 일부개정
 2023. 3. 1 일부개정
 2024. 12. 1 일부개정
 <학술정보기획팀>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정관과 고려대학교의 학칙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(중앙도서관 및 분관을 총칭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무(館務)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.
- 제 2 조 (규정·지침) 도서관의 자료이용, 변상(辨償), 제적(除籍) 등과 관련한 도서관 제규정 및 관무처리의 기준이 될 업무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편 제

- 제 3 조 (기구) 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과 분관으로서 세종학술정보원, 의학도서관을 둔다.
- 제 4 조 (조직) ① 중앙도서관에는 학술정보기획팀, 학술정보개발팀, 학술정보서비스팀, 학술정보큐레이션팀을 둔다.
 ② 세종학술정보원에는 학술정보팀을 둔다. <개정 2024. 12. 1.>
 ③ 의학도서관에는 의학정보관리팀을 둔다.
- 제 5 조 (도서관장) ① 도서관장(중앙도서관장을 겸하며, 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.)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
 ② 관장 유고 시에는 부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6 조 (분관장) 분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분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 7 조 (부관장) ① 중앙도서관에는 본교 부처장 직제에 해당하는 부관장을 둔다.
 ②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 8 조 (부장) ① 각 부서에는 부(팀)장을 둔다.
 ② 부(팀)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 3장 사무분장

- 제 9 조 (사무분장) ① 도서관의 사무분장의 대강은 사무분장규정에 따르고, 그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과 업무편람(Staff Manual)에서 정한다. <개정 2024. 12. 1.>
- ②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의 공통업무는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24. 12. 1.>

제 4 장 도서관위원회

- 제 10 조 (도서관위원회)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1. 도서관 제규정의 제정과 폐기에 관한 사항
 2. 자료구입 예산 및 집행안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
 3. 도서관에 관한 총장 자문사항
 4. 관장이 제의하는 사항
 5. 도서관의 신축, 증·개축 등 주요 시설사항
 6. 기타 도서관 운영상의 중요사항
- 제 11 조 (구성) ① 당연직 위원은 관장, 분관장, 기획예산처장, 관리처장, 부관장, 학술정보 기획팀장으로 한다.
- ②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. <개정 2024. 12. 1.>
- ④ 간사는 위원장이 별도 선임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 12 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 13 조 (소집) 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서는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 12. 1.>

제 5 장 운영

- 제 14 조 (기본목표) 도서관은 학칙 제1조의 교육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운영의 기본목표로 삼는다.
- 제 15 조 (중앙도서관)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종 정책 및 방침 등을 총괄하며, 분관 간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주관한다.
- 제 16 조 (분관) ① 각 분관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의 정책 및 방침을 준용한다.
- ② 분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 17 조 (예산 및 자료 수집) ① 관장은 대학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도서관 자료는 관련 지침에 따라 수집하고 관리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.
- 제 18조(직원의 배치와 연수교육) ① 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고려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.
- ② 관장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도서관

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24. 12. 1.>

제 19 조 (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)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수립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기초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
② 관장은 전년도 계획시행의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(제11조 제3항, 제16조 제3항 신설,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11조 제1항, 제12조 내지 제14조, 제16조 제2항 개정, 제18조 삭제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, 제4조, 제16조 제3항 개정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, 제4조, 제16조 제3항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7조 삭제, 제11조 제1항, 제3항 개정)
2. (경과조치) 제7조 삭제 및 제11조 제1항, 제3항의 개정은 부처장 직제 시행에 따라 2012년 11월 2일자로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 및 제4조 법학도서관장 직제 및 법학정보관리팀 조직은 2015년 2월 1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 개정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 조 번호 변경, 제15조, 제17조 개정, 제16조, 제18조 신설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부서명 개정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4조, 제9조, 제11조, 제13조, 제18조 개정)